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9

발의연월일: 2024. 6. 25.

발 의 자:김희정·박준태·박성민

김상욱 • 이종배 • 강대식

이인선 · 성일종 · 엄태영

김태호 · 김기현 · 김도읍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의 지급, 의료 및 요양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그런데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 이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월액으로 지급되는 수당금액 42만원과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 추가로 지원되는 생계지원금 10만원이 전부임. 따라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전기요금, 수도요금,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가 경제적으로 큰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, 수도요금,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사회적 예 우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공공요금의 지원) ① 국가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요금,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따른 도시가스요금, 「수도법」에 따른 수도요금(이하 "공공요금"이라 한다)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공공요금의 지원 방법・절차・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공요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참전유공자에게 부과되는 공공요금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개 정 안 제10조의2(공공요금의 지원) ① 국가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요 금,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따른 도시가스요금, 「수도법」에 따른 른 수도요금(이하 "공공요금"이 라 한다) 중 다른 법령 등에
	 따라 감면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을 지원하여야 한다. ② 공공요금의 지원 방법・절 차・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